

제310회 임시회
2012. 5. 9.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장선배 의원 외 6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2년 4월 16일
- 회부일자 : 2012년 5월 2일

3. 제안이유

- 재해구호·노인복지·장애인복지·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 자립장학금 용도로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현행 조례에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심의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현행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변경(안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안 제4조 및 제10조)
 - “범위내에서” → “범위에서”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9호 삭제(부칙)
 - 도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

- 동 조례안은 현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심의기능을 복지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기금관리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

- 사회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로 변경하여 대행하도록 하였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하였으며,
-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사회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9호를 삭제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됨.

별첨 : 도정조정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의 주요사항 비교

주요 사항 비교표

구 분	도정조정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설치목적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심의, 연구, 의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 실·국·본부장, 정책기획관, 공보관 ● 위촉직(10인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야별 유관기관 공무원 - 학계와 기타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지사, 보건복지국장 ● 위촉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전문가 - 사회복지법인 대표 - 사회복지 비영리법인·단체 대표 - 사회복지 수요자 대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 충청북도의회 의원 등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대책 ● 정부 시달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 사항 ● 공무원 국외훈련 심사 ● 민원 관련 조정 및 제도개선 사항 ● 각종 가격 및 요금의 조정 ● 품질관리 정착 관련 시책 연구·발전 ● 지역에너지 중요시책 및 사업추진 ●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근로청소년 장학생 심사 ● 청소년 자립지원사업기금 관리 사항 ● 행정규제의 심사·정비 ● 보안심사 및 제안심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등
주관부서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